

응급실 간호사의 법의간호 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도

유양숙¹ · 차경숙² · 조옥희² · 이수경³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¹, 제주대학교 간호대학², 경북대학교 수사과학대학원 법의간호학과³

Emergency Department Nurses' Recognition of and Educational Needs for Forensics Nursing Education

Yoo, Yang-Sook¹ · Cha, Kyeong-Sook² · Cho, Ok-Hee² · Lee, Soo-Kyeong³

¹College of Nursing,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²College of Nursing,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³Department of Forensic Nursing, Graduate School of Forensic and Investigative Scienc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urvey was to investigate emergency department nurses' recognition of forensics nursing and their educational needs for forensics nursing education. **Methods:** Data were collected via questionnaires from 167 emergency department nurses who were working in 7 university hospitals. Nurses' experiences of trauma or accidents and their recognition of and educational needs for forensic nursing education were assessed. **Results:** All subjects reported having suffered bodily injury due to falling or serious traffic accidents; 92.2% reported having suffered bodily injury caused by suicide attempts; 91.6% reported having experienced physical violence or abuse; 76.0% reported having experienced sexual assault or abuse; 68.9% reported having experienced some difficulties during their nursing care due to lack of forensics knowledge; and 88.6% reported never having been trained in forensics nursing. The educational needs score for "forensics nursing" was 3.61; the needs score for "abuse- and violence-related education" was 3.65; the needs score for "incident data collection related education" was 3.47; and the needs score for "forensics theory related education" was 3.34.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e study underscore a strong need to develop an educational program on forensics nursing for emergency department nurses.

Key Words: Forensic nursing, Emergency nursing, Educational needs assessment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산업화와 도시화로 현대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다양한 종류의 사고와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2010년 사망원인 중 자살과 운수사고에 의한 사망이 각각 4위, 9위로서 사고로 인한 사망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Korean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1, September). 또한, 각종 범죄도 증가하는 추세로 강력 범죄는 2002년에 70,018건에서 2010년 266,490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 중 흉악범죄가 2002년 14,896건에서 2010년 27,482건으로 증가하였다(Supreme Prosecutors' Office Republic of Korea, 2011, September).

이에 의료인이 임상실무 현장에서 사고나 범죄와 관련된 상황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응급실 간호사들은 교통사고, 화재, 낙상, 폭력, 학대, 성폭력, 자살이나

주요어: 법의간호, 응급간호, 교육요구 사정

Corresponding author: Cho, Ok-Hee

College of Nursing, Jeju National University, 102 Jejudaehak-ro, Jeju 690-756, Korea.
Tel: +82-64-754-3887, Fax: +82-64-702-2686, E-mail: ohcho@jejunu.ac.kr

투고일: 2012년 6월 25일 / **수정일:** 2012년 10월 17일 / **게재확정일:** 2012년 10월 19일

타살, 자연재해 등으로 심각한 외상을 입은 환자들을 돌보는 경우가 많다(Assid, 2005; Kim, 2011; Sekula, 2005).

폭력이나 학대, 성폭력 등과 관련된 외상이나 사망을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 법적, 공적으로 간호하는 과정을 법의간호라고 한다(Hammer, Moynihan, & Pagliaro, 2006). 법의간호의 대상자는 성폭력, 노인이나 아동 및 배우자 학대, 폭력 혹은 사고로 인한 외상이나 사망의 희생자와 가해자를 포함한다. 이들은 생존여부에 상관없이 잠재적인 법적문제를 가지고 응급실에 내원하게 되는데(Eldredge, 2008; Kim, Chae, Kwak, & Lee, 2010), 응급실 간호사는 환자를 대면하여 신체적, 심리적 돌봄을 제공할 뿐 아니라 가족들과 면담하고, 환자의 소지품과 검사실로 보낼 검체들을 다루는 첫 번째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다(Mercer, Mason, Mckeown, & McCann, 2000). 따라서 응급실 간호사는 배상과 관련된 외상을 입고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들을 모두 임상 법의간호 대상으로 인식해야 한다.

응급실에서는 생명을 위협하는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치료를 우선하므로, 간호사가 법의학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거나 지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 사건해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증거들을 제대로 식별하여 확보하거나 보존하지 못하게 되어 오판을 초래할 수 있다(Lynch, 1991; Youk, 2005). 또한, 성폭력, 아동이나 노인학대 등의 피해자들은 의료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의 적절하지 못한 대응으로 인해 이차적인 피해를 당하기 쉬운 실정이므로 간호사가 법의학적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은 인권보호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Lee, 2006).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법의학에서 간호사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여 1970년대부터 간호사들에게 법의간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Lynch, 1991),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다(Joint Commission on Accreditation of Healthcare Organizations [JCAHO], 2006; Sekula, 2005).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일반인은 물론 간호사도 법의간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법의간호와 관련하여 법의간호사의 역할(Kim et al., 2010; Youk, 2005)과 적용방안(Lee, 2006), 법의학 관련경험과 관심도(Park, 2011), 법의간호 수행정도와 역량에 대한 연구(Jo, 2012)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법의학 관련경험을 변사에 국한하여 조사하였거나 법의간호 수행정도를 간호기록과 증거물관리를 중심으로 파악하였으므로 응급실 간호사들이 근무 중 법의간호를 제공해야 하는 외상이나 사고 사건에 노출된 경험을 파악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었다.

또한, 법의 관련 교육에 대한 연구도 응급구조사를 대상으로(Kim, 2007)가 시행되었을 뿐 아직까지 간호사의 법의간호 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도를 다룬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외상이나 사고 환자를 빈번하게 접하는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근무 중 경험한 외상·사고 사건과 법의간호 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도를 파악하여 향후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응급실 간호사가 경험한 외상·사고 사건을 파악한다.
- 응급실 간호사의 법의간호 교육에 대한 인식정도를 파악한다.
- 응급실 간호사의 법의간호 교육요구도를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응급실 간호사가 근무중 경험한 외상·사고 사건의 빈도와 법의간호 교육에 대한 인식과 교육요구도를 조사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500병상 이상인 7개 대학병원의 응급실에 근무하면서 다양한 외상·사고 사건을 경험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편의표집하였다. 본 연구에서 필요한 최소 대상자 수는 양측검정 유의수준 .05, 상관관계 분석에서의 중간 효과크기 0.6, power .95로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하였을 때 152명이 산출되었다(Faul, Erdfelder, Lang, & Buchner, 2007). 탈락률 15%를 고려하여 175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171명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회수율: 97.7%), 이중 응답이 불완전한 4명을 제외하여 총 167명(탈락률: 2.3%)을 최종대상자로 하였다.

3. 연구도구

1) 외상·사고 사건경험

외상·사고 사건의 경험은 Kim (2011)의 도구를 토대로 응

급실 간호사가 근무 중 경험할 수 있는 외상·사고 사건을 목록화하였으며, 응급의학과 전문의 1인, 응급실 간호사 2인, 법의학과 교수 1인, 간호학과 교수 2인의 자문을 얻어 수정·보완하였다. 이 도구는 총 14문항으로 각 문항에 대하여 최근 1년 동안 월 평균 경험 횟수를 기입하도록 하였으며, 흔히 경험하지 않은 경우는 연 평균 경험횟수를 기입하도록 하였다.

2) 법의간호 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도

법의간호 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도는 선행연구(Garbacz Bader & Gabriel, 2009; Kent-Wilkinson, 2009, 2011; Sekula, 2005)와 문헌(American Nursing Association, 1997; Emergency Nurses Association, 2007)을 근거로 개발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문장의 읽기 수준, 모호성, 이해도, 전문용어의 사용 등을 고려하여 법의간호 교육에 대한 인식 9문항과 교육요구도 13문항의 기초문항을 개발한 후 응급의학과 전문의 1인, 응급실 간호사 2인, 법의학과 교수 1인, 법의간호학 석사학위 과정생 2인, 간호학과 교수 2인으로 구성된 총 8명의 전문가 집단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각 항목에 대하여 '매우 타당하다'는 4점, '타당하다'는 3점, '타당하지 않다'는 2점,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1점으로 응답하도록 하여 Content Validity Index (CVI)가 80% 이상인 경우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내용타당도 검증 결과, 법의간호 교육에 대한 인식 9문항 모두 80% 이상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전문가의 합의하에 설문지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설문지에 법의간호와 각 영역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시하였다. 법의간호 교육요구도 13문항 중 '사건상황의 자료분석 결과의 해석'과 '형법의 이해'는 80% 이상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삭제되었으며, '사망 관련서류의 종류 및 발급절차(예: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등)', '대량재해(지진, 태풍 등)에 대한 관리 및 처치'와 '사건·사고에 대한 미디어나 언론 인터뷰에 대한 대처방법' 항목을 추가 하자는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여 문항을 재구성하였다. 재구성한 도구에 대해 다시 전문가 집단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14문항 모두 80% 이상의 합의가 이루어져 최종 확정하였다.

법의간호 교육에 대한 인식은 문항의 내용에 따라 해당 범주에 답하도록 하였고, 교육요구도는 각 문항에 대하여 '매우 필요하다'는 4점, '필요하다' 3점, '그저 그렇다' 2점, '필요하지 않다' 1점, '전혀 필요하지 않다' 0점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93이었으며, 영역별로는 학대 및 폭력 관련 교육이 .96, 사건처리 및

자료수집 관련 교육이 .87, 법의간호 이론교육이 .83이었다.

4. 자료수집

본 연구의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C 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심의번호 CUMC 11U065)을 받았다. 자료수집기간은 2011년 5월부터 10월까지였으며, 연구자가 직접 병원을 방문하여 간호부의 허락을 받은 후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여 참여에 동의한 경우에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각자 작성하도록 한 후 즉시 회수하였다. 설문지 작성시간은 약 3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AS/WIN 9.2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외상·사고 사건 경험과 법의간호 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7.9세였고, 성별은 여자가 89.8%(150명), 남자가 10.2%(17명)였다. 종교가 있는 경우가 52.1%(87명)이었으며, 3년제 대학 졸업자가 59.9%(100명)였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79.6%(133명)였다. 총 임상실무 경력이 60개월 이상인 경우가 37.8%(63명)였고, 응급실 근무경력이 13~35개월인 경우가 38.3%(64명)였다. 일반간호사가 89.2%(149명)였으며, 책임간호사 이상이 10.8%(18명)였다(Table 1).

2. 외상·사고 사건경험

모든 대상자가 낙상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심각한 신체손상 사건에 대한 경험이 있었다. 낙상으로 인한 신체손상 사건을 월 5~28회 경험하는 대상자는 49.7%(83명)였으며, 월 4회 이하는 34.1%(57명), 29회 이상은 16.2%(27명)였다. 교통사고로 인한 심각한 신체손상 사건을 월 5~28회 경험하는 대상자는 49.7%(83명)였고, 월 4회 이하가 31.1%(52명), 29회 이상이 19.2%(32명)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6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Age (year)		27.9±5.2
Gender	Female	150 (89.8)
	Male	17 (10.2)
Religion	Yes	87 (52.1)
	No	80 (47.9)
Education level	Diploma	100 (59.9)
	Bachelor	60 (35.9)
	Master	7 (4.2)
Spouse	Yes	34 (20.4)
	No	133 (79.6)
Total clinical career (month)	≤ 12	22 (13.2)
	13~35	57 (34.1)
	36~59	25 (14.9)
	≥ 60	63 (37.8)
Emergency department career (month)	≤ 12	38 (22.8)
	13~35	64 (38.3)
	36~59	22 (13.2)
	≥ 60	43 (25.8)
Position	Staff nurse	149 (89.2)
	Head and charge nurse	18 (10.8)

대상자 중 92.2%(154명)가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손상 사건을 경험하였으며, 월 5회 이상이 58.1%(97명)였다. 자살자의 시신을 월 1회 이상 보는 대상자는 89.8%(150명)였고, 30.5%(51명)가 월 5회 이상 경험하였다. 기계로 인한 신체적 손상 사건을 경험한 대상자는 89.2%(149명)였고, 월 5회 이상이 48.5%(81명)였다. 타인에 의한 신체적 폭력 및 학대사건을 경험한 대상자는 91.6%(153명)였으며, 52.1%(87명)가 월 5~28회 경험하였다. 타인에 의한 성폭력 및 성학대 사건은 76.0%(127명)가 경험하였고, 연 2~12회 경험하는 경우가 34.7%(58명)였다. 가족 내 신체적 폭력 및 학대 사건은 대상자 중 76.7%(128명)가 경험하였으며, 가족 내 성폭력 및 학대 사건은 대상자 중 65.3%(109명)가 경험하였다. 화재 및 가스 폭발, 건물이나 설치물 붕괴로 인한 신체손상 사건을 경험한 대상자는 각각 82.0%(137명)과 70.7%(118명)였다. 타살로 인한 시신과 자연재해와 관련된 신체손상 사건을 경험한 대상자는 각각 70.1%(117명)과 59.3%(99명)였다(Table 2).

3. 법의간호 교육에 대한 인식

법의학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업무 중 어려움을 겪은 경험

이 있는 대상자는 68.9%(115명)였다. 법의간호에 대하여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은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47.9%(80명)였으며, 들어본 적도 없는 경우가 34.7%(58명), 조금 알고 있는 경우가 17.4%(29명)였다. 법의간호에 대하여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65.3%(109명)였으며, TV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법의간호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경우가 55.7%(93명)로 가장 많았고, 학술대회나 특강이 22.7%(38명), 업무 중 사건과 관련된 경험이 13.8%(23명), 학교 수업이 7.8%(13명)였다.

법의간호 관련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대상자가 88.6%(148명)였으며, 법의간호 교육이 필요한 부서로 응급실을 선택한 경우는 94.6%(158명), 정신과 병동(53.9%), 중환자실(52.1%), 수술실(36.5%) 순이었다. 법의간호 교육이 대학원 교육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35.9%(60명)였으며, 보수교육이나 직무교육이라고 한 경우는 28.1%(47명), 학부 교육과정이 25.8%(43명), 단기 교육과정이 10.2%(17명)였다.

법의간호 업무는 법의간호 전담간호사가 해야 한다는 의견이 66.5%(111명)로 가장 많았다. 응급실 업무에 필요한 법의간호 영역은 응급실 법의간호가 8.85점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 전담간호 7.72점, 임상 법의간호 7.07점, 아동 법의간호 6.65점, 노인 법의간호 5.49점, 정신건강 법의간호 5.12점 순이었다(Table 3).

4. 법의간호 교육요구도

대상자의 법의간호 교육요구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43점이었다. 교육요구도는 학대와 폭력 관련 영역이 3.65점으로 가장 높았고, 사건 자료수집 관련 영역 3.47점, 법의간호이론 영역이 3.34점이었다.

학대와 폭력 관련 영역 중 아동학대 피해자 관리와 처치에 대한 교육요구도가 3.68점으로 가장 높았고, 가정폭력 피해자 관리와 처치 3.65점, 노인학대 피해자와 성폭력 피해자 관리와 처치는 각각 3.64점이었다.

사건 자료수집 관련 영역 중 사망 관련서류의 종류와 발급 절차에 대한 교육요구도가 3.55점으로 가장 높았고, 피해자의 신원 확인방법은 3.53점, 대량재해에 대한 관리와 처치는 3.51점이었었다. 피해자의 신체사정 및 증거물 수집방법은 3.50점이었으며, 사건·사고에 대한 미디어나 언론 인터뷰 대처방법 3.39점, 검사와 부검에 대한 이해 3.36점이었었다.

법의간호이론 영역 중 범죄 및 사고와 관련된 법률과 정책

Table 2. Type and Frequency in the Experience of Traumatic Event

(N=167)

Traumatic event type	Frequency	n (%)
Physical injury due to falling (monthly) (falling, slide, trauma due to bump)	≤ 4	57 (34.1)
	5~28	83 (49.7)
	≥ 29	27 (16.2)
Serious physical injury due to traffic accidents (monthly) (car, train, airplane, ship, bike, bicycle etc.)	≤ 4	52 (31.1)
	5~28	83 (49.7)
	≥ 29	32 (19.2)
Physical injury due to suicide attempts (monthly)	0	13 (7.8)
	1	24 (14.4)
	2~4	33 (19.8)
	≥ 5	97 (58.1)
Corpse of suicides (monthly) (jumping from the building, medicine, drown, hang, cut artery etc.)	0	17 (10.2)
	1	62 (37.1)
	2~4	37 (22.2)
	≥ 5	51 (30.5)
Physical injury due to use of machinery (monthly) (relate to work, ride etc.)	0	18 (10.8)
	1	25 (15.0)
	2~4	43 (25.8)
	≥ 5	81 (48.5)
Physical abuse & violence by others (monthly) (robber, wound etc.)	0	14 (8.4)
	≤ 4	36 (21.5)
	5~28	87 (52.1)
	≥ 29	30 (18.0)
Sexual abuse & violence by others (yearly)	0	40 (24.0)
	1	36 (21.5)
	2~12	58 (34.7)
	≥ 13	33 (19.8)
Physical abuse & violence by family (yearly) (female, old man, children, the handicapped)	0	39 (23.3)
	1	14 (8.4)
	2~12	54 (32.3)
	≥ 13	60 (35.9)
Sexual abuse & violence by family (yearly) (female, old man, children, the handicapped)	0	58 (34.7)
	1	20 (12.0)
	2~12	54 (32.3)
	≥ 13	35 (21.0)
Physical injury due to fire or gas explosion (yearly)	0	30 (18.0)
	1	18 (10.8)
	2~12	68 (40.7)
	≥ 13	51 (30.5)
Physical injury due to breakdown of building or installations (yearly)	0	49 (29.3)
	1	32 (19.2)
	2~12	48 (28.7)
	≥ 13	38 (22.8)
Corpse of homicide (yearly)	0	50 (29.9)
	1	27 (16.2)
	2~6	37 (22.2)
	≥ 7	53 (31.7)
Physical injury due to natural disasters (yearly) (typhoon, flood, earthquake etc.)	0	68 (40.7)
	1	33 (19.7)
	2~6	32 (19.2)
	≥ 7	34 (20.4)

Table 3. Perceptions of Forensic Nursing

(N=167)

Item	Categories	n (%) or M±SD
The experience of difficulties in working due to a lack of forensic knowledge	Yes	115 (68.9)
	No	52 (31.1)
The experience of hearing for forensic nursing	Not heard	58 (34.7)
	Heard but not understood	80 (47.9)
	Heard and understood a little	29 (17.4)
Interest in forensic nursing	Yes	109 (65.3)
	No	58 (34.7)
Opportunity of getting interest in forensic nursing	TV, media (Forensic drama, etc)	93 (55.7)
	Conference or special lecture	38 (22.7)
	Crime related experience during work	23 (13.8)
	School lecture	13 (7.8)
The experience of education for forensic nursing	Yes	19 (11.4)
	No	148 (88.6)
Department required forensic nursing education	Emergency room	158 (94.6)
	Psychiatric ward	90 (53.9)
	Intensive care unit	87 (52.1)
	Operation room	61 (36.5)
	Obstetrics and gynecology ward	35 (21.0)
	Pediatric ward	27 (16.2)
	General surgery ward	14 (8.4)
Necessary course in forensic training	Graduate course	60 (35.9)
	Continuing education/Staff duty training	47 (28.1)
	College course	43 (25.8)
	Short course (6 months, 1 year)	17 (10.2)
The person in forensic nursing	Forensic nurse practitioner	111 (66.5)
	Charge nurse/Head nurse	29 (17.4)
	Staff nurse	14 (8.4)
	Nursing administration team	13 (7.8)
The scope of forensic nursing required for emergency room	Forensic ER nursing	8.85±1.88
	Sexual assault nurse examiner	7.72±1.89
	Clinical forensic nursing	7.07±2.44
	Forensic pediatric nursing	6.65±20.2
	Forensic geriatric nursing	5.49±2.08
	Forensic psychiatric nursing	5.11±2.29
	Death investigators	3.44±2.76
	Correctional nursing	3.41±2.41
	Forensic legal nurse consultant	3.31±2.44

에 대한 교육요구도가 3.4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범심리학과 법의학간호의 이해는 3.32점, 법 정신의학 3.31점 순이었다 (Table 4).

논 의

과학기술의 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간호사의 역할도 점차 세분화, 전문화, 과학화되고 확대되어가고 있다. 최

근에는 외상이나 죽음, 폭력, 범죄사고 등 과학수사와 관련된 법의학적 대처까지 간호사의 역할 확대와 전문화가 필요하게 되었다(Kent-Wilkinson, 2009; Lynch, 1991).

본 연구의 모든 대상자들은 낙상이나 교통사고로 심각한 신체손상을 입은 환자를 돌본 경험이 있었으며, 대상자 중 16.2%와 19.2%는 각각 낙상이나 교통사고로 신체손상을 받은 환자를 거의 매일 경험하였다. 또한, 자살시도로 신체적 손상을 받은 환자나 자살자의 시신을 보는 사건은 각각 92.2%, 89.8

Table 4. Educational needs of Forensic Nursing

(N=167)

Item	M±SD
Education of abuse & violence	3.65±0.52
Management and treatment of child abuse victims	3.68±0.55
Management and treatment of domestic violence victims	3.65±0.54
Management and treatment of elder abuse victims	3.64±0.56
Management and treatment of sexual assault victims	3.64±0.55
Education of incident of treatment & data collection	3.47±0.47
Kind of death documents & issuance procedures (certificate of death etc.)	3.55±0.56
Methods of victim identification	3.53±0.57
Management and treatment of disaster (earthquake, typhoon etc.)	3.51±0.61
Physical assessment & evidence collection of victims	3.50±0.57
Measures of press' interview on the Incident/accident	3.39±0.70
Understanding of the autopsy	3.36±0.62
Theory education of forensic nursing	3.34±0.50
Law & policy related to crime and accident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life assurance, property insurance etc.)	3.41±0.57
Psychology and law	3.32±0.66
Understanding of forensic nursing	3.32±0.58
Psychiatry and law	3.31±0.67
Total	3.43±0.52

%가 월 1회 이상 경험하고 있었다. 물리적, 신체적 증거와 정확한 진술확보가 중요한 타인에 의한 신체적 폭력과 학대, 타인에 의한 성폭력과 성학대 사건도 대상자 중 91.6%, 76.0%가 경험하였으며, 타인에 의한 신체적 폭력 및 학대 사건을 월 29회 이상 경험하는 경우가 18.0%, 타인에 의한 성폭력 및 성학대 사건을 월 1회 이상 경험하는 경우가 19.8%였다. 2011년 국가응급 환자진료정보망을 통해 등록된 응급실 이용자 중 질병이외에 비의도적 사고가 24.8%, 폭력이나 타살, 자살이나 자해가 각각 1.2%(51,708명)와 0.5%(20,849명)로서(National Emergency Medical Center, 2012, May) 응급실 간호사들이 근무 중 사고·사건과 관련된 환자를 빈번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지난 한 달 동안 경험한 외상사건의 빈도를 확인한 연구(Kim, 2011)에서 타인에 의한 신체적 폭력과 학대, 낙상, 교통사고를 매우 자주 경험한다고 한 대상자가 많았던 것과 유사하였다. 응급실 간호사들은 업무 중 성폭력이나 폭력, 학대, 응급 외상 등 법의학적 중재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대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응급실 간호사들은 환자의 신체사정, 투약, 배설, 정서적 지지 등의 일반적인 업무를 넘어 더 전문적인 업무를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자 중 34.7%(58명)는 법의간호를 들어본 적이 없었으며,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모르는 경우도

47.9%(80명)였다. 또한, 68.9%는 법의학 관련지식이 부족하여 업무 중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여 아직까지 법의간호가 생소한 분야임을 알 수 있었다. 즉, 법의간호에 대한 인식과 지식의 부족으로 대상자에게 신체적 손상에 대한 의료적 조치 이외에 피해자 보호와 심리적, 법률적 측면의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 법의간호에 관심이 있는 대상자는 65.3%였으나 법의간호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11.4%에 불과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법의간호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실정임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법의간호를 현재 응급실 간호사를 위한 보수교육이나 직무교육에 포함시켜 새로운 의료 환경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법의간호 교육을 받은 후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Eldredge (2008)의 연구결과 대상자의 95%가 외상사건을 다루는 실무에서 법의간호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였고, 87%가 법의간호와 관련된 훈련이 더 필요하다고 하였다.

범죄나 사고현장에 직접 출동하는 119 구급대원들은 업무 중 범죄와 관련된 경험, TV나 언론매체, 학술대회나 특강을 통하여 법의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Kim, 2007),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TV나 언론매체, 학술대회나 특강, 업무 중 범죄와 관련된 경험을 통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는 최

근 법의학 드라마 및 각종 범죄사건과 관련한 언론매체를 통하여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20세기 이후 각종 매체들이 대중의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법의학과 관련된 드라마나 쇼 등이 법의학에 대한 흥미를 증가시킨다고 한 Kent-Wilkinson (2009)의 견해와 유사하였다. 대중매체가 법의학에 대한 인식을 확대시키는 장점은 있으나 범죄에 대한 선정주의(sensationalism of crime)나 법의학과 법의간호사의 역할 등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오히려 법의학과 법의간호의 정착과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Hammer et al., 2006).

본 연구대상자 중 35.9%는 법의간호 교육을 대학원 교육과정에서 시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하였으며, 다음으로 보수교육이나 직무교육, 학부 교육과정, 단기 교육과정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의간호 업무를 법의간호 전담간호사가 수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66.5%로 가장 많았으며, 17.4%는 책임간호사나 수간호사라고 응답하였다.

미국의 경우 법의간호의 중요성이 널리 알려져 있으며, 1970년대부터 간호사를 대상으로 법의간호 교육을 시작하였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학위과정 중 선택 과정이나 자격인정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고(Kent-Wilkinson, 2011), 1997년부터는 웹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Mercer et al., 2000). 이외에도 법의간호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이나 성폭력과 성학대, 가정폭력, 법의학, 피해자 대응법 및 사망 관련서류의 발급절차 등을 주제로 한 세미나, 집담회, 연수교육, 평생교육과정 등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Eldredge, 2008;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Forensic nurses, 2012, June).

응급실 간호사는 임상적, 법의학적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환자나 보호자가 가장 먼저 접촉하는 첫 번째 의료진으로 정확하고 객관적인 건강사정은 물론 법적증거 자료의 수집, 전문적인 법적 증언과 환자에게 적절한 의학적, 법률적, 간호학적 서비스를 제공한다(Emergency Nurses Association, 2007). 그러므로 간호사가 적절한 의학적·법률적 지식과 조사능력을 갖추어야 전통적인 업무이외에 범죄사건 해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법의간호사는 다양한 법의학적 상황 속에서 연구자, 상담자, 교육자의 역할을 폭넓게 수행하게 된다(Echaore-McDavid & McDavid, 2010; Garbacz Bader & Gabriel, 2009). 이러한 업무의 전문성 때문에 미국은 성폭력 전담간호사(SANE; sexual assault nurse examiner)와 법의간호 상담자(forensic legal nurse consultant)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으며, 법의 임

상간호사(Clinical forensic nurse), 법의 응급간호사(forensic ER nurse), 법의 정신간호사(forensic psychiatric nurse), 법의 아동간호사(forensic pediatric nurse) 등이 전문보건의력으로 활동하고 있다(Echaore-McDavid & McDavid, 2010). 또한, 체계적이고 공식화된 법의학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프로토콜을 개발하여 실무에 적용하고 있는데(JCAHO, 2006), Eldredge (2008)의 연구결과 의료기관 내에 법의학 관련 프로토콜이 있는 경우가 57%, 법의학 전문가가 있는 경우는 34%였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전문 법의학자를 보유하고 있는 의과대학은 전국 41개 대학 중 9개로 아직까지 법의학조차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이다(Kim, 2007). 국내 최초로 경북대학교 수사과학대학원에 법의간호학과가 개설되어 법의간호사를 배출하고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전문가 양성에 어려움이 있으며, 현재 법의간호사는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체계적 관리 아래 자격증을 취득하는 13개 분야의 전문간호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의간호 인력을 전문간호사 교육이나 대학원 교육과정을 통하여 양성하려면 행정적·제도적 지원은 물론 전문가들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법의간호에 대한 인식조차 부족한 우리나라의 간호 현실에서, 적절한 법의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의간호에 대한 지식을 갖춘 간호사의 저변 확대가 필요하며, 여러 병원에서 법의간호 대상자를 빈번하게 접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절실하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응급실 업무에 필요한 법의간호 영역으로 범죄의 인식이나 증거수집, 보존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응급실 법의간호와 성폭력이나 비인간적 폭력에 대한 조사와 간호를 실시하는 성폭력 전담간호, 주로 폭력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외상치료와 법률적인 조사 등을 수행하는 임상 법의간호를 선택하였다.

대상자의 법의간호 교육요구도는 학대와 폭력 관련 영역인 아동학대, 가정폭력, 노인학대, 성폭력 피해자 관리와 처치가 가장 높았다. 다음은 사건 자료수집 관련 영역인 피해자 신원 확인방법과 사망 관련서류의 종류와 발급절차에 대한 교육요구가 높았다. 반면 법의간호 업무의 기초를 이루는 학문적 지식체계인 범심리학, 법의간호의 이해 등 법의 관련 간호이론에 대한 교육요구도가 가장 낮았다.

간호사들은 임상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본인이 느끼는 신뢰성을 높이고, 불확실성을 낮추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며(Cranley, Doran, Tourangeau, Kushniruk, & Nagle, 2009),

이때 개인의 지식이나 직관, 이전의 경험 등에 의존한다. 스웨덴 간호사의 법의간호 교육요구도를 조사한 연구(Rask & Aberg, 2002)에서 간호사들은 환자와의 관계수립이나 간호수행이 어렵거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교육에 대한 요구가 생겼다고 하였다. 실제로, 간호사가 신체적·정신적 폭력이나 학대 등과 관련된 환자사정, 보고서작성과 같은 업무에 관여하게 되면서 추가교육이 필요하게 되었다(Kent-Wilkinson, 2011; Scales, Mitchell, & Smith, 1993).

사건·사고 현장의 환자는 대부분 응급실로 후송되는데, 이때 근무하는 간호사가 법의학적 지식이 없다면 환자의 의복이나 신체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수사단서나 증거를 방치하거나 파손시킴으로 사건해결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간호사가 법의간호와 관련된 상황에서 법률을 집행하고 환자사정과 관찰, 증거수집과 보존, 상처식별과 법정증언 등의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의간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추가적인 교육을 받아야만 한다(Echaore-McDavid & McDavid, 2010).

법의간호사의 역할과 교육에 대한 질적 연구의 결과 간호사들은 특성화된 법의간호교육과 경력관리의 부재로 업무수행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obinson & Kettles, 1998). 앞으로 신규 및 경력간호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사례를 포함하여 실무중심의 법의간호 교육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는 아동 성폭력 매뉴얼과 증거 채취용 키트와 같이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업무프로토콜을 다양한 상황별로 간호협회나 관련 학회 차원에서 확대 개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법의간호사가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과 규정 등 기관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간호사의 법의간호에 대한 인식을 보편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학부교육과정에 법의간호학 기초를 도입하고,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보수교육, 의료기관별 직무교육, 대학원의 전문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법의간호사가 전문간호사로서 역할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간호학계의 노력과 함께 사회적 관심과 이해, 국가적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에서 제한된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추후 임상간호사를 위한 법의간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표준화된 법의간호를 실무에 적용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프로토콜의 개발과 함께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응급실 간호사의 법의간호 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도를 파악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의 결과 근무 중 외상·사고 사건을 빈번하게 경험하고 있었으나 법의간호에 대한 인식과 지식이 부족하여 법의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대상자 중 65.3%는 법의간호에 대해 관심이 있었으며, 간호사를 위한 법의간호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법의간호에 대한 실용성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이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또한, 간호협회나 법의간호 관련학회, 의료기관 차원의 보수교육이나 직무교육은 물론 대학과 대학원 교육으로의 확대를 제언한다. 아울러 법의간호에 있어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관계, 독립적 업무권한 등과 관련된 정책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American Nursing Association. (1997). *Scope & standards of forensic nursing practice*. Washington, DC: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Forensic Nurses and the American Nurses Association.
- Assid, P. A. (2005). Evidence collection and documentation: Are you prepared to be a medical detective? *Topics in Emergency Medicine*, 27, 15-26.
- Cranley, L., Doran, D. M., Tourangeau, A. E., Kushniruk, A., & Nagle, L. (2009). Nurses' uncertainty in decision-making: A literature review. *Worldviews on Evidence-Based Nursing*, 6, 3-15. <http://dx.doi.org/10.1111/j.1741-6787.2008.00138.x>
- Echaore-McDavid, S., & McDavid, R. A. (2010). *Career opportunities in forensic science*. New York: Ferguson.
- Eldredge, K. (2008). Assessment of trauma nurse knowledge related to forensic practice. *Journal of Forensic Nursing*, 4, 157-165. <http://dx.doi.org/10.1111/j.1939-3938.2008.00027.x>
- Emergency Nurses Association. (2007). *Emergency nursing core curriculum* (6th ed.). St Louis: Saunders.
- Faul, F., Erdfelder, E., Lang, A. G., & Buchner, A. (2007). G*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39, 175-191. <http://dx.doi.org/10.3758/BF03193146>
- Garbacz Bader, D. M., & Gabriel, L. S. (2009). *Forensic nursing: A concise manual*. Boca Raton: CRC Press.
- Hammer, R. M., Moynihan, B., & Pagliaro, E. M. (2006). *Forensic nursing: A handbook for practice*. London: Jones and Barlett Publishers.

-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Forensic nurses. (2012, June). *Forensic education*. Retrieved June 15, 2012, from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Forensic nurses Web site: <http://www.iafn.org/displaycommon.cfm?an=7>
- Jo, N. Y. (2012). *Forensic-nursing performance and competency levels of emergency department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 Joint Commission on Accreditation of Healthcare Organizations. (2006). *Hospital accreditation standards 2006*. Oakbrook Terrace: JCAHO.
- Kent-Wilkinson, A. E. (2009). Forensic nursing education in North America: Social factors influencing educational development. *Journal of Forensic Nursing, 5*, 76-88. <http://dx.doi.org/10.1111/j.1939-3938.2009.01038.x>
- Kent-Wilkinson, A. E. (2011). Forensic nursing educational development: An integrated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8*, 236-246. <http://dx.doi.org/10.1111/j.1365-2850.2010.01667.x>
- Kim, B. Y. (2007). *The educational need of forensic medicine for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in 119 rescue servi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 Kim, H. J. (2011). *The relationships among traumatic events, compassion fatigue, burnout and compassion satisfaction on emergency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 Kim, J. E., Chae, J. M., Kwak, J. S., & Lee, S. H. (2010). The role of forensic nurse in the child sexual abuse response center. *Korean Journal of Victimology, 18*, 135-157.
- Korean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1, September). *2010 Cause of death statistics*. Retrieved June 15, 2012, from the Korean National Statistical Office Web site: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6/2/index.board
- Lee, K. R. (2006). *Application of forensic nursing into Korean nurs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 Lynch, V. A. (1991). Forensic nursing in the emergency department: A new role for the 1990's. *Critical Care Nursing Quarterly, 4*, 69-86.
- Mercer, D., Mason, T., Mckeown, M., & McCann, G. (2000). *Forensic mental health care: A case study approach*. Edinburgh: Churchill Livingstone.
- National Emergency Medical Center. (2012, May). *2011 Annual report on the emergency medical statistics*. Retrieved June 15, 2012, from the National Emergency Medical Center Web site: http://www.nemc.or.kr/infor/board_list.jsp?boardLeftMenuFlag=17
- Park, E. M. (2011). *Knowledge, experience and interest on forensic medicine of nurses in the emergency medical cent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 Rask, M., & Aberg, J. (2002). Swedish forensic nursing care: Nurses' professional contributions and educational needs. *Journal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9*, 531-539. <http://dx.doi.org/10.1046/j.1365-2850.2002.00538.x>
- Robinson, D. K., & Kettles, A. M. (1998). The emerging profession of forensic nursing: Myth or reality? *Psychiatric Care, 5*, 214-218.
- Scales, C. J., Mitchell, J. L., & Smith, R. D. (1993). Survey report on forensic nursing. *Journal of Psychosocial Nursing and Mental Health Services, 31*, 39-44.
- Sekula, L. S. (2005). The advance practice forensic nurse in the emergency department. *Topics in Emergency Medicine, 27*, 5-14.
- Supreme Prosecutors' Office Republic of Korea. (2011, September). *2010 Crime analysis*. Retrieved June 15, 2012, from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Republic of Korea Web site: <http://www.spo.go.kr/spo/info/stats/stats02.jsp>
- Youk, G. Y. (2005). *The role of forensic nurse in the situation of sexual assaul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